

국가보조항로 운항결손액 산정기준(제14조제6항 관련)

1. 일반원칙

- 가. 운항결손액은 운항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추가 운항하는 경우의 비용은 추가 운항을 위한 비용만을 산정한다.
- 나. 선사는 다수 항로의 운영 및 타 업종 영위로 해당항로 또는 항차의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비율 기준 또는 그 밖의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지출을 안분할 수 있다.
- 다.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 산정에 있어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.
- 라. 비용은 운항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시 그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 1의 비목별 예정가격 산출기준을 준용한다.

2. 운항 비용항목

- 가. 선원 등 운항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및 법정 보험료
- 나. 유류비
- 다. 선박수리비
- 별표 3의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
- 라. 감가상각비
- 「법인세법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 - 장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마. 여객·선원·선박·선주배상책임 공제료(보험료)
- 바. 선용품비
- 단, 지난 3년 평균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사. 안전관리비
- 아. 임시 용선료
- 선박수리, 검사 등 단기간 불가피하게 용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 - 전년도 실적 또는 유사한 선박의 용선비용을 상한으로 한다.

자.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
차. 일반관리비